

제 748 호
1980. 1.25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정상천
편집 : 문화공보관 심계섭
전화 75-7834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전실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1393 호 :	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부속병원 수가조례개정조례.....	3
제 1394 호 :	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	4
제 1395 호 :	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 장학금지급조례	4
제 1396 호 :	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	10
제 1397 호 :	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및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	11

◎ 규 칙

제 1840 호 :	서울특별시잡급직외사규칙중개정규칙	11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◎ 고 시

제 20 호 :	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및변경과지적승인	12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무원으로서의 노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제 22 호 :	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	13
제 23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고시	13
제 24 호 :	도시계획사업 (일단의주택자조성사업) 및시설 (공원도로) 지적승인	14
제 25 호 :	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	15
제 26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일부변경결정및지적승인	15
제 27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	16
제 28 호 :	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) 결정및지적승인	16
제 29 호 :	도시계획 (미관지구) 지적승인	17

◎ 공 고

제 21 호 :	도시계획사업 (청사부지및도보확장) 실시계획공람공고	18
제 24 호 :	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공람공고	22
제 25 호 :	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실효공고	22
제 26 호 :	KB 표시허가취소공고	23
제 27 호 :	광견병예방을위한방견단속공고	24
제 29 호 :	분노특별수거지역제외 (비수거) 지역공고	24

조

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학교 건강관리소 부속병원 수가조례중 개정조례 물 이에 공포한다.

1980.1.23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장갑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393 호

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 부속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학교 건강관리소 부속병원수가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

• 별표

기본진료료점수표

(1 점 : 10 원)

제 3 항 및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의료보험이 외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의료보험법 35 조의 규정제 외한 진료수가 기준 및 약가 기준에 의한다.

③제 2 항의 진료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별표제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 2 항의 진료수가 기준 및 약가 기준에 의한다. (단 의료보험 수혜 대상자가 아닌 학생에 대하여는 진찰료의 30%를 감면한다)

④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직간을 받는 입원환자의 식사대는 당해년도 예산상의 급식액에 1 할을 가산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분 류	점 수	비 고
○ 진찰료	30	기초진료료 (간지헌처치및처방진료포함) 는 진찰료와 동시에 청구할 수 없고, 진료행위가 이루어질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.
○ 기초진료료	50	
○ 영안실료	200	영안실료는 보호자측의 귀책 사유가 없는한 3일을 초과하여 장수 할 수 없다.

분 류	집 수	비 고
<p>○ 제증명료 가. 병사용 진단서 나. 상해진단서 다. 신체검사서 라. 시책부검표 마. 기. 발급증명서 사본 (1전당)</p>	<p>100 300 300 2,000 20</p>	<p>제증명 발급수수료는 이표에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기초진료료와 동액으로 하고, 별도의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검사료를 가산한다.</p>
<p>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장 심 상 친 (인) 1980년 1월 25일</p> <p>◎서울특별시조례 제 1394 호</p> <p>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</p> <p>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 2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②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건축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외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. 제 4 조 제 2 항중 도시정비국장 및 도시정비 담당관 을 건축국장으로 한다.</p>	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장 심 상 친 1980년 1월 25일</p> <p>◎서울특별시조례 제 1395 호</p> <p>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</p> <p>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(이하 시라한다) 산업체 근로청소년중 경제취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의 취학 장려를 위하여 지급하는 근로청소년 장학</p>	

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의
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장학금 지급대상) 장학금
지급대상은 교육법 제 103 조의 4
및 동법 제 107 조의 4 규정에 의하
여 산업체에 근로하는 청소년을
위하여 설치된 야간 특별학급(이하
"특별학급"이라 한다)에 취학
하는 학생으로 하며 장학금의
여유가 있을 때에는 기타 산업체
근로청소년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

제 3 조 (지급순위) ① 장학금 지급
대상자의 지급순위는 다음 각호에
의한다.

- 1. 산업체 특별학급 학생중 산업
체의 휴·폐업, 극심한 불경기등
으로 교육비를 산업체에서 부담
하기 곤란한 학생. 다만, 관계
기관의 취업 알선을 정당한 사
유없이 거부한 학생은 제외한다.
- 2. 기타 산업체 근로청소년중 경
제적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
거나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
근로청소년

② 장학금은 제 1 항 제 1 호 해당자
는 전액 지급하면 제 1 항 제 2 호

해당자는 장학금의 범위내에서 시
장이 따로 결정하여 지급한다.

제 4 조 (대상자 추천절정) ① 특별학급
설치 학교의 장은 매 분기별로 교육
비 납부 마감일로 부터 5 일 이내에
교육비 미납 학생명 단과 소수 산업체명
을 관할 노동청 지방사무소장에게
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거 통보한다
② 관할 노동청 지방사무소장은 미납
사유를 검토 확인하여 장학금을 지
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
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비 납부
마감일로 부터 15 일 이내 별지
제 2 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추천
한다.

③ 시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추
천된 자를 장학생 심사위원회(이하
"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 심사를
거쳐 결정한다.

④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에 해당하는
자에 대해서는 위 절차에 준하거나
시장이 결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
라 추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
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.

제 5 조 (위원회 구성 운영) ① 위원회
의 위원장은 제 1 부 시장이 되며,
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를 포

합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1. 기획관리관
2. 산업국장
3. 보건사회국장
4. 새마을담당관
5. 시 교육위원회 학무국장
6. 노동청 지방사무소장
7. 서울 상공회의소 사무국장
8. 특별학급 설치학교장 기업체 대표등 시장이 위촉하는 자

②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.

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.

④위원회의 의안정리 기타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업과장과 교육위원회 실업교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한다.

⑤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동액의 수당 기타 실비

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6 조 (장학금 지급) ①장학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수업료, 숙식외식, 입학금등 학교에 납부하는 공납금을 우선 지급하고 장학기금의 여유가 있는 때에는 교과서, 학용품대 등으로도 지급 할 수 있다.

②장학금은 지급대상자 결정후 5일이내에 해당 학교장 또는 학생에게 전달하며 별지 제 3 호 서식의 장학증서도 동시에 진수한다.

③학교장이 장학금을 전달 받았을 때에는 해당학생에게 장학금 지급내 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

제 7 조 (장학기금 조성관리) ①장학기금은 시장 책임하에 조성하며 그 재원은 시의 일반회계 진출금, 새마을성금, 기업가 및 특지가의 헌금으로 한다.

②장학기금은 은행에 예치하되 그 이차로서 장학금을 지급한다.

제 8 조 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 1 호 44)

교육비미납학생명단 (00년 0학기)

수신 : 노동청 00지방사무소장

근로 청-년 장학금 지급조례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다
음과 같이 00년도 0학기 교육비미납학생 명단을 통보합니다.

연 번	학 년 반	성 명	소 속 산 업 체	학 비 미 납 액	비 고
				19	.

(별지 제 2 호 서식)

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

수신 : 0 0 0 시도지사

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조례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
과 같이 0 0 년도 0 분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합니다.

학 교 명	학 년 반	성 명	산 업 계 명	추 원 사 유

(별지 제 3 호 서식)

장 학 증 서

소 속 0 0 학교

0 학년 0 반

성 명 0 0 0

위 학생은 00년도 0분기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임을

증명함.

19 . . .

서 울 특 별 시 장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세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
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상천
1980년 1월 30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396 호

서울특별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

서울특별시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 4 조중 "구청장 (출장소장을 포함한
다. 이하 같다)"을 "구청장"으
로 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
설한다. 다만, 자동차등록에 따른
등록세 및 면허세 부과 징수사무는
자동차등록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.

제 2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1 조 (과세표준 및 세율) 등록세
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법제 130
조 내지 법제 149 조의 규정에 의
한다.

제 22 조 제 1 항중 "구청장에게"를
"구청장 (자동차등록세의 경우는
자동차등록사업소장)에게"로 한다.

제 2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6 조 (납세의무자) 주민세 납세
의무자는 법제 173 조의 규정에 의
한다.

제 8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81 조 (과세표준) 사업소세의 과
세표준은 법제 247 조의 규정에 의
한다.

제 8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83 조 (납기) 법제 250 조 제 3 항
의 규정에 의한 재산할의 납세의
무자는 법제 248 조의 규정에 의하
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 일부
터 7월 10 일까지 납세지를 관할
하는 구청장에게 자진신고 첨부하
여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조례는 법률 제 3174 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
행일로부터 적용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 당시
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
나 부과하여야 할 시책에 대하여는
종전의 예에 의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
시 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
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
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상천

1980년 1월 30일

◎ 서울특별시 조례 제 1397 호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개정 조례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 조 (수당 지급액) ① 지하철본부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조정수당 지급액 및 지급대상은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고 의무직공무원의 조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의 일반직공무원 조정수당액과 동액을 지급한다.

② 제 1 항의 수당을 제외한 기타 세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및 지방소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정한 지급액의 상한액까지 지급할 수 있다.

③ 의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잠급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법정급여외의 기타지급액과 동액의 기타지급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방법 및 운용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잠급직 의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잠급직 의사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인
1980년 1월 31일

◎ 서울특별시 규칙 제 1840 호

서울특별시 잠급직 의사규칙 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잠급직 의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1 항 중 '수련의 (인턴, 엑스텐 및 레지던트)'를 '전공의 (인턴 및 레지던트)'로 하고, 제 2 항 중 '시장'을 '서울특별시장 (이하 '시장'이라 한다)'로 한다.

제 3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전공의의 총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4 조 제 1 항 중 '수련의'를 '전공의'로 한다.

제 5 조 및 제 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5 조 (조정수당, 기술수당) 일반의 및 전문의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지방공무원 보수

규정상외 조정수당 및 기술수당과 동액외 조정수당 및 기술수당을 지급한다.

제 6 조 (법정급여외의 지급액) 일반의 및 전문외에 대하여는, 재정국립병원의 동일직급의사의 지급액 (법정급여를 제외한 기타지급액)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각병원의 특수성과 외사의 자질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.
별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

고 시

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및 변경과 지적승인

1.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동법제 13조와 건설부고시제 463 호 (79.12.10)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과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1. 23.

서울특별시 장

○ 노선조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기 설	중 점	비 고
신설	소로	3		64m	시흥동 산 53	시흥동 산 53	
기정	"	"		104m	수유동 351	수유동 산 61	
변경	"	"		108m	"	"	위치변경
기정	"	2		60m	하월곡동 67	하월곡동 67	
변경	"	"		"	"	"	위치변경 지적승인
기정	"	3		75m	장위 76-199	장위동 76-	
변경	"	"		"	"	200	폐지

별첨도면 표시가 같음(도면생략)

<p>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2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제 3 호 (80.1.16) 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63 호 (79.12.10)</p>	<p>의 도시계획법상 권한위임에 따라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>1980. 1.25</p> <p>서울특별시 장</p>			
<p>가. 지적승인조서</p>				
<p>구 분</p> <p>결 정</p>	<p>시 설 명</p> <p>학 교</p>	<p>위 치</p> <p>성북구 정릉동 산 17-6 일대</p>	<p>면 적</p> <p>24,382 m² (7,375 평)</p>	<p>비 고</p> <p>학교법인 성한학원</p>
<p>부침도면 생략</p>				
<p>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고시</p> <p>1. 서울특별시공고제 3 호 (80. 1.10) 로 실시계획공람 공고된 세광상업전수학교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25 조 제 1 과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에 의거 사업시행허가하고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외 세광상업전수학교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>1980. 1.25</p> <p>서울특별시 장</p>	<p>가. 사업시행지 : 도봉구 하계동 산 6-38 외 5 필지</p> <p>나. 사업의종류 및 경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, 세광상업전수학교신설</p> <p>다. 사업규모 및 면적 : 9,554 (2,890 평)</p> <p>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: 하계동 산 16-38 . 세광상업전수학교장</p> <p>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</p> <p>1) 착수년월일 : 사업실시인가 7 일 이내</p> <p>2) 준공예정일 : 착수일로부터 1 년간</p> <p>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: 생략</p> <p>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</p>			

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생략					
○ 토지세목조서					
지 번	지 목	지 적 ()	소 유 자	주 소, 성 명	비 고
산 16-4	임	39,868	서대문구	홍제동 332-12 최정식의 2인	
산 16-19	"	3,769	"	녹번동 28-24 임창호	
산 16-30	무	무		무	
산 16-38	임	7,170	성동구	성수동 13-441 김광철	
28-4	대	79	"	28-4 이명숙	
28-7	대	99	"	28-7 이명숙	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 호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) 및 시설 (공원, 도로) 지적승인			학법제 13 조 규정과 건설부고시 463 호 (79.12.10) 에 의거 이물 회시 한다.		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 호 (80.1.22) 에 의거 시설결정된 서울특별시 마 포구 관내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주택 지조성사업) 및 시설 (공원, 도로)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			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인다.		
			91980.1.26.		
			서울특별시 장		
가.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적승인조서					
구 분	사 업 (시 설) 명	위 치	면 적	비 고	
시설	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	마포구 성산동 산 11-47 일대	3,478.8 평		
"	도 로	"	920.7 평	단지내 0-8m	
"	어린이공원	"	169.6 평	단지내	
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					

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 호
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
 1. 건설부고시 제 337 호 ('79.9.20)
 건설부고시 제 390 호 ('79.10.31)
 건설부고시 제 416 호 ('79.11.20)

로 변경결정된 서울도시계획 용도
 지역에 대하여 건설부고시 제 463
 호 ('79.12.10) 권한위임에 따라
 도시계획법 제 13조에 의거 지적승
 인하고 이를 고시한다.
 1980.1.26
 서울특별시 장

○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조서

변 경 구 분	위 치	면적(㎡)	비 고
주거지역-상업지역	용산구동자동 14 번지일대	44,400	
자연녹지지역-	강서구신정동 748 번지일대	114,050	
주거지역-자연녹지 지역	강남구취락구조개선사업 지구내	95,000	중열, 산디 계리, 암산
자연녹지지역-주거	영등포구시흥동산 84-2 일대	5,391	

*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 호
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일부 변경
 결정 및 지적승인
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도로)
 를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
 조와 동법시행령 7 조 2 및 건설부
 고시 463 호 ('79.12.10) 와 서울특
 별시 도시계획법령 부속규정 5 조

2 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
 결정 및 지적승인 하얏기 고시한다.
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 2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
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
 보인다.
 1980.1.29
 서울특별시 장

○ 일부변경결정및지적승인조서							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면 장	시 점	종 점	비 고
기정	대로	1	40	35 m	3,820 m	적선동	세브란스병원	신촌동 2-192의 면적 126 m ² 불도로 에 포함시킴
변경	"	"	40	"	"	(광장3호)	"	

* 별첨도면표시와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7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시고시 제 387 호 (78.8.3) 로 결정된바 있는 당시 도시계획 시설 (도로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전설부고시 463 호

(79.12.10)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부천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1.29

서울특별시 장

○ 도로지적승인조서

구분	류별	번호	폭원	면 장	시 점	종 점	비 고
대로	3	84	25 m	3,250 m	화곡동	오정동	신월동-오정동간 1,450 m 지적승인

* 별첨도면표시와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8 호

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) 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)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와 전설부고시제 41호(77.3.16)

에 의거 고시한다.
 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
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 1980.1.29
 서울특별시장

가. 공용의청사주소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공용의청사	강남구서초동영동 1지구 2공구 444 부력일대	98,550 ㎡	제 1 공용의청사부지
신설	.	강남구삼성동영동 2지구 2공구 300 부력일대 및 449,450 부력	74,410 ㎡	제 2 공용의청사부지

* 별첨도면표시와갈음 (도면생략)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29 호

도시계획 (미관지구) 지적승인
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4 호 (80.1.19) 로 결정고시된 도봉구 관내도시계획 미관지구물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

의 규정에 의거 이틀 고시한다.
 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1.31

서울특별시장

도시계획 (미관지구) 지적승인

구분	종별	연장(m)	폭원(m)	면적(㎡)	위치	비고
신설	4	1,180	양측 15	41,100	우이동-상계교간	공원제외준공업지
.	4	880	.	26,400	번동455-왕동422	적금회고시제외
.	4	4,000	.	120,000	수유279-미아동구계간	삼양로

별첨도면표시와갈음 (도면생략)

공 고

○ 서울특별시 공고 제 21 호

도시계획사업 (청사부지및도로 확장) 실시계획공탁공고
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87 호 (77.6.13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공용의 청사부지 및 도로확장공사 구간내에 건축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탁,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에 응하고자 이에 공고함
- 2.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함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함
- 3. 관련도서는 용산구청 총무과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함.

1980.1.

서울특별시

공 략 개 요

가. 사업장의 위치 : 용산구원효로 1 가 26 의 15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공용의 청사부지 및 도로확장공사

다. 사업의 규모

- 청사부지확장 : 1,381.3 평
- 도로확장 : B = 22 → 30 ~ 32 m
L = 70 m
B = 8 → 8.3 m
L = 140 m

○ 하수도

- D = 600 mm / m
- L = 65 m
- A = 8.25 a

○ 기타 용벽, 담장

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(용산구청장)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00 일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토지조서 참조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

관계인의 주소성명 : 별첨토지조서 참조

첨부 : 토지조서 1 부

건 물 조 서												
연 번	원 건 물					수 용 건 물			소 유 자		권 리 자	
	동 명	지 번	층 별	구 조	건 영	층 별	구 조	건 영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
1	원효로1가	25	지하	철근콘크리트 스라브	345.57	지하	철근콘크리트 스라브	345.57				서울특별시
	"		1층	"	357.19	1층	"	357.19				
	"		2"	"	319.43	2"	"	319.43				
	"		3"	"	"	3"	"	"				
	"		4"	"	"	4"	"	"				
	"		5"	"	"	5"	"	"				
"	육탑	"	55.17	육탑	"	55.17						
2	"	25	1층	조적조스라브	7.86	1층	조적조스라브	7.86				"
3	"	25	1"	연와조와습	60	1"	연와조와습	60				"
			2"	"	60	2"	"	60				"
4	"	26-17	1"	복조와습	11.04	1"	복조와습	11.04	원효로1가 26-17	성대규		

연 번	원 전 물					수 동 건 물			소 유 자		권 리 자	
	동 명	지번	층 별	구 조	건 평	층 별	구 조	건 평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
5	원효로1가	26-34	1층	목조와즙	9.31	1층	목조와즙	9.31	원효로1가 26-34	조동석		
6	"	26-35	"	"	9	"	"	9	26-35	이병설		
7	"	26-39	"	목조도단	5.28	"	목조도단	5.28	26	김운구		
8	"	"	"	목조와즙	5.27	"	목조와즙	5.27	26-16	유재근		
9	"	26-31	1층	연와조스라브	16.88	1층	연와조스라브	16.88	26-31	박영규		
	"	"	2층	"	15.41	2층	"	15.41	"	"		
10	"	26-16	1층	목조도단	3.7	1층	목조도단	3.7	26-16	박순희		
	"	"	"	목조와즙	12	"	목조와즙	12	"	"		
11	"	26-42	"	"	16.5	"	"	16.5	26-42	조석경		
12	"	26-15	"	"	17.45	"	"	17.45	26-15	오준익		
	"	"	"	"	13.55	"	"	13.55	"	"		
13	"	24-20	"	"	8.22	"	"	8.22	24-20	김창순		

25-20

제 748 호 시

보 1980. 1. 25.

수용대상토지·건물조사서							
연번	동명	토지					소유자
		수용전			수용중		
		지번	지적(㎡)	지목	지번	지적(㎡)	
1	원효로1가	25	5,360	대	25	5,360	대 서울특별시
2	"	24-25	17	"	24-25	17	"
3	"	26-17	43	"	26-17	43	원효로1가 정내부
4	"	26-34	29.4	"	26-34	29.4	26-34 조흥역
5	"	26-35	61.2	"	26-35	61.2	26-35 이방철
6	"	26-39	63.8	"	26-39	63.8	26-15 석현부
7	"	26-31	91.6	"	26-31	91.6	26-31 석영삼
8	"	26-16	78.3	"	26-16	78.3	26-16 박근희
9	"	26-42	123.3	"	26-42	123.3	26-42 조석경
10	"	26-15	145.5	"	26-15	145.5	26-15 오준익
11	"	24-20	31.6	"	24-20	31.6	24-20 김항문
12	"	25-2	1,013.1	"	25-2	1,013.1	국 내무부
13	"	25-3	424.8	"	25-3	424.8	"
14	"	25-6	76.7	"	25-6	76.7	"
15	"	26-1	6.6	"	26-1	6.6	" 내무부
16	"	26-3	152.1	"	26-3	152.1	"
17	"	26-4	131.7	"	26-4	131.7	"
18	"	26-5	72.7	"	26-5	72.7	"
19	"	26-6	89.2	"	26-6	89.2	"
20	"	26-7	122.3	"	26-7	122.3	"
21	"	26-8	92.6	"	26-8	92.6	"
22	"	26-9	56.2	도	26-9	56.2	"
23	"	26-10	1,378.5	대	26-10	1,378.5	"
24	"	26-11	6.6	"	26-11	6.6	"
25	"	26-12	2.3	"	26-12	2.3	"
26	"	26-13	102.5	"	26-13	102.5	"
27	"	26-14	148.8	"	26-14	148.8	"
28	"	26-30	6.6	"	26-30	6.6	"
29	"	26-45	9.6	"	26-45	9.6	" 서도샤론
30	"	26-46	12.2	"	26-46	12.2	" 서도샤론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24 호

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공람공고

1. 당시가 시행중인 구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길동 360외24호일대

2. 본 공고에 대하여는 이해 관계인 및 토지소유자에게 별도로 서류 송달을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- 사업 계획 변경 내용 -

지 구 명	당 초 시 행 면 적	변 경 시 행 면 적
구로지구	458,297 평	444,210 평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25 호

제 2 종 전기공사면허실효공고

전기공사법 제 30 조의 규정에 의거 제 2 종 전기공사면허를 실효

조치하고, 전기공사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0. 1.25.
서울특별시 장

다 음

면허번호	업 체 명	대표자	소 재 지	제2종 면허일	제1종 면허일	실 효 사 유
서울제2종 1	범한기공사	한봉길	성동구자양동산 15-20	78.6.15	80.1.1	전기공사법 제 5 조 (1항발)
4	한국전기(주)	황태영	중로구청진동 18	"	"	"
8	신우건설산업(주)	최인식	용산구한강로 2가 2-35	"	"	"
11	한일전기건설공사	이상식	봉대문구망우동 444-19	"	"	"
12	대우전기공합상사	임희용	성동구중곡동 116-4	"	"	"
24	주일건설(주)	정순택	중 구소공동 111-6	78.6.26	"	"
32	(주)한양건축	김춘권 현종락	드림구수유동 191-67	"	"	"

면허번호	업 체 명	대표자	소 재 지	제 2 종 면허일	제 1 종 면허일	면 허 사 유
58	이화전공사	강상옥	관악구노량진 240-46	78.7.3	80.1.1	전기공사법 제 5 조 (1종발급)
59	풍전설(주)	유영	종로구낙원동 138-1	"	"	
64	(주)황고우사	황석주	마포구창전동 13-23	78.7.20	"	
67	(주)창의건설	박창섭	영등포구독산 3 동 92-8	"	"	
72	대원산업(주)	강상희	중 구초동 1-12	"	"	
76	청신건설(주)	백승화	용산구갈월동 10-3	"	"	
80	근양전기합자회사	이근영	영등포구구로동 910	"	"	
81	동방기업사	정호덕	성북구성북동 1가 35-1	"	"	
85	동광전기	이동은	관악구상도동 201-144	"	"	
89	배영산업(주)	김기우	중구장충동 1가 57-12	"	"	
93	대성전기공사	이정돈	영등포구시흥동 193-7	"	"	
94	삼명건설산업(주)	이근주	중구충무로 5가 36-3	"	"	
96	대원건설	김성남	중구남창동 46-13	"	"	
97	성신건설(주)	박창운	도봉구미아동 777	"	"	
98	부영산업(주)	김기현	중구초동 10-1	"	"	
101	남운건설(주)	주수정	용산구원효로 1가 39-10	"	"	
103	서광산업(주)	박상길	종로구종로 5가 25-1	"	"	
110	덕원전기공사	김광복	강서구화곡동 345-61	"	"	
48	전일기업	전갑식	종로구체부동 52	78.7.3	"	
120	봉신통업(주)	서정인	영등포구신도림 390-7	78.7.20	"	
121	삼풍건설산업(주)	김동한	중구북창동 104	"	"	
124	서림산업(주)	김팔불 이대균	중구신당동 217-91	"	"	
133	영선전기공업(주)	이우규	종로구송인동 72-55	78.7.24	"	
142	서울종합건설(주)	송현섭	중구다동 58-1	"	"	
123	(합)경인전기건설	권경인	동대문구신설동 103-2	78.7.29	"	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26 호

K S 표시허가취소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제 1 항의 규
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 S 표시 허
가를 취소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

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

1980. 1. 25.

서울특별시

- 1. 허가번호: 제 1552 호
- 2. 허가일자: 1977. 11. 19.
- 3. 제조업체명: 삼보전기공업사
- 4. 소재지: 서울성동구선수동 2 가 27-15
- 5. 대표자: 강 인 식
- 6. 규격번호: KSC 4204
- 7. 품 명: 단상유도전동기
- 8. 종류, 등급: 100V/200V 60Hz
4극분상기동형(개방형)
A종, 0.1kw, 0.2kw
- 9. 취소사유: KS 표시허가자진반납
- 10. 취소일자: 1980. 1. 25.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7 호

광전병예방을위한방전단속공고

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1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리불 배회하는 광전병 예방주사미접종 개(방전)를 단속코자 동법시행규칙 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.

1980. 1. 30.

서울특별시

- 1. 실시목적: 광전병만연의 지연방지

2. 실시대상: 사용하고 있는 축전 (이환전) 및 방전

3. 실시지역: 서울특별시전역

4. 실시기간: 80. 1. 30-12. 31.

5. 실시방법: 각구별토 단속반 편성 단속에 입담.

6. 기타사항

가. 억류된 축전은 구청별로 억류 상황을 공고함.

나. 억류된 축전을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축주는 억류기간중 (2일간) 광전병 예방주사 필증을 지참 인수하여야 함.

다. 억류기간 중 반환요구가 없는 축전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의하여 박살처분 또는 학술연구용으로 제공함.

라. 방전축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36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됨.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9 호

분뇨특별수거지역외제외(비수거)지역공고

오물청소법 제 3 조 1 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특별청소지역에서 제외(비수거)되는 분뇨비수거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0. 1.

서울특별시

구 별	동 명	채 외 지 역	동 명
강 남	내곡동	전 지 역	·
	새곡동	"	·
	일원동	"	
	삼성동	일부지역 (16-1)	24동
	도곡동	" (24-5)	1, 2, 3, 4, 5동
	서초동	" (43-2)	7, 8동
	양재동	" (15-1)	2동
강 서	과해동	전 지 역	